

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994. 12

교 육 사 회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994. 12. 19.
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 :

○ 제출일자 : 1994년 12월 14일

○ 회부일자 : 1994년 12월 14일

3. 제안이유 :

음용수의 수질기준등에 관한규칙 개정에 의해 증전 37개 항목에서 43개 항목으로
검사항목이 증가되었으며 조문중 현실불부합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.

4. 주요골자

○ 검사항목추가 및 수수료 조정

- 검사항목 추가 (6종) - 수수료 각각 4,000원
 - 알루미늄, 디클로로메탄, 벤젠, 툴루엔, 에틸벤젠, 크실렌.
- 수수료 조정 (5종)
 - 음용수중 정성시험(색도, 탁도, 맛, 낱새, PH) 1항목당 380원에서 1항목당 1,300으로 조정.

○ 시험 처리기간 변경

- 공해관계 시험 : 15일 → 20일 (5일 증가)

○ 현실 불부합 조문 개정

- 제3조(업무) 제1항 제3호중 "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오염"을
"공중위생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정밀검사"로
 - 제9조(수수료 감면)조문 중 "국가기관이"를 "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"로
 - 동조 제7호 다음에 제8호 신설
8.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목욕수 원수 및
욕조수를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한 경우.

5. 검토 의견

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
검토한 바,

본 조례안은

- 보건사회부령 제932호 ('94. 7. 1)에 의거 음용수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
개정으로 총전 37개 항목에서 43개 항목으로 추가된 검사항목 및 수수료를
조정하고
- 시험처리기간중 공해관계시험은 15일에서 20일로 조정하는것 등은 관계규칙의
개정에 따른 것이고
- 제3조 제1항제3호 중 "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오염"을 "공중위생법에 의한
공중이용시설 정밀검사"로 개정하려는것 등은 현실적으로 불부합한 조문을
지역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개정조례안 : 별첨